

# '23년 경찰공무원(경정, 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30 ~ 12:50) -

## 목 차

【형사소송법(경정)】	-----	1
【경찰행정법(경감)】	-----	3

##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 (1) 사법경찰관 P는 甲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류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P는 甲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단속의 취지, 영장없이 수색을 하는 이유 등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甲이 거세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7번 노래방으로 들어가 수색하여 판매중이던 주류를 발견하였다. 한편 사법경찰관 P는 이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었고, 위 수색을 한 15일 전에도 같은 의심을 품고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 하였으나 현장적발에 실패한 바 있었다.
- (2) 그런데 甲의 노래연습장 옆 가게인 乙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도 주류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이러한 사실을 신고를 통해 확인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乙의 노래연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乙의 노래연습장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P가 乙의 노래연습장을 수색하던 중 피가 묻어 있는 칼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가 그 후 乙에게 환부한 후 다시 제출받았다. 이 칼은 乙이 사채업자 A를 살해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다.
- (3) 한편 乙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A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후 A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乙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맞지만 당시 심야에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乙이 범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는 A의 여자친구인 B와 사법경찰관 P를 증인신청하였다. 법정에 출석한 B는 A가 자신에게 乙이 분명히 범인이 맞다고 사건 직후부터 며칠 전까지 말해왔다고 증언하였고, P는 A가 경찰조사에서 乙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실관계 (1)에서, 사법경찰관 P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행한 수색은 적법한가? (15점)
2. 사실관계 (1)에서, 만일 며칠 후 사법경찰관 P가 甲의 노래연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위 수색은 적법한가? (5점)
3. 사실관계 (2)에서, 위 칼이 乙의 A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20점)
4. 사실관계 (3)에서, B와 사법경찰관 P의 증언을 乙의 A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0점)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20점)

## <참고조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 (1)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甲은 업무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직무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 (2) 이에 A경찰서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甲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그 사실을 甲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관할 징계위원회는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甲은 2022. 11. 11.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3) 한편, 甲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28. 甲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였다. 甲은 2022. 12. 29.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실관계 (1)에서, 甲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A경찰서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단, 판단여지는 논외로 함) (20점)
2. 사실관계 (2)에서, 甲이 자신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소청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3. 사실관계 (3)에서, 甲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경찰책임의 원칙 (30점)
2.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20점)

# <참고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 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